

[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 출 일 : 2003. 12. 1.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상정일자 : 2003. 12. 8.

(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 64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○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일 생산능력 15,000톤이상인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

지방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

○ 미 전환시 지방채 발행 불허 및 국고보조사업, 교부세 시책사업 제외 등 각종 재정지원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

○ 2005. 1. 1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

나. 주요골자

○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
- 상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급수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(안 제3조)
-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(안 제4조)
-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(안 제5조)
-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6조)
-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(안 제7조)
-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함(안 제9조)
-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0조)
-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
(안 제13조)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4조)
-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(안 제15조)
-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6조)
-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7조)
-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18조)
-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9조)
-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20조)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공기업 전환시의 장점에 대한 설명필요

○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

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필요

○ 공기업 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수도 요금인상후의 현실화율이 69%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필요

○ 부칙 제1조 시행일이 2005년 1월1일부터 인데 2005년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○ 조선제 위원외4인 수정안 발의

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공기업회계로 전환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수정안을 발의

수정안 대비 새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출자) ① <u>군 일반회계</u> 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.	제12조(출자) ① <u>일반회계</u> ----- ----- -----
제13조(재정지원) 다음 각 호의 경우에 <u>군 일반회계</u> 또는 <u>특별회계</u> 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	제13조(재정지원) ----- ----- <u>다른 특별회계</u> ----- -----
1. <u>비상재해</u>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	2. ----- -----
2. 제11조의 구정에 의한 전입금	1. -----
제15조(예산의 집행규정)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.	제15조(예산의 집행규정) ----- ----- -----
1.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	----- ----- -----
2. <u>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</u>	삭 제
3.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	2 ----- ----- -----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

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“군 일반회계”를 “일반회계”로 하고,
제13조중 “특별회계” 를 “다른 특별회계”로 “제1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
고,
제15조 “제2호”를 삭제하고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수정코자 하는 수정
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생 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생 략